2025년도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4월 개시 과제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

1. 제출대상

○ 대상과제: 2025년 4월 개시 계속과제([붙임4] 참조)

2. 제출절차 및 기간



- * 기한 내에 성과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, 사업단에 별도 문의하여 성과등록 완료 다음 날부터 연차보고서 제출 (성과 접수처리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, 등록한 성과가 연차보고서에 미반영 됨)
- ** 차년도 협약변경 승인이 되어야 차년도 정보가 통합이지바로 및 NTIS로 연계됨
- ※ 상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진행 가능
- ※ 2024년도 연구과제 협약변경 신청(통보성, 승인성) 계획이 있을 경우, 연차보고서 제출 전까지 필히 완료
- 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메일 안내 예정

3.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
- □ 제출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제출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 접속 후 성과등록 및 보고서 파일 업로드

1) 성과등록(~3.12.)

IRIS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→ [과제수행] → [성과-성과등록] → 과제조회(사업연도는 2024년) → 성과항목 등록(성과 증빙 파일 업로드 포함)

2) 연차보고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(3.14.~3.21.)

2-1) IRIS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→ [과제평가] → [보고서제출] → 과제조회(사업연도는 2024년) → 보고서 목록에서 해당 과제 클릭 후 하단의 [보고서제출] 탭 → 연차보고서 관련 파일 업로드 → [제출] 2-2) IRIS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→ [과제평가] → [보고서제출] → 과제조회(사업연도는 2024년) → 보고서 목록에서 해당 과제 클릭 후 하단의 [보고서제출] 탭 → [기관담당자 승인]

3)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(3.26.~4.4.)

IRIS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→ [과제수행] → [협약변경-차년도 협약변경 신청] → 과제조회 (사업연도는 2024년) →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

- ※ 성과등록 및 연차보고서 제출,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 방법은 [붙임6] 매뉴얼 참조
- ※ 연구원 등록/변경, 연구비 계좌 입력, 연구개발비 변경 등은 [차년도 협약변경] 단계에서 변경 가능

□ 제출서류

제출서류	서식	비고	
① (필수) 연차보고서	[붙임2] - 1	한글서식 에 따라 작성	
② (필수) 자체평가의견서	[붙임2] - 2	서식에 따라 작성 ·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 로 업로드	
③ (필수) 마일스톤(Milestone) 목표			
④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			
⑤ (해당시) [붙임2] 참조			

[※] 연구비 집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내 다음연도 연구계획은 2025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에 대해 작성

○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관련

-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과제는 사업단 계속지원 확정처리 후,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 시 [연구개발비] 탭의 비목별 연구비 구성 내 연구시설·장비비 에 해당 금액만 계상하고, 2025년도 연구 개시 후 (승인통보)협약변경 신청 메뉴를 통 해 [연구장비] 탭에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등을 별도 제출(사업단으로 공문 제출 필요)
-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사업단에서 심의하며, 1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사업단 검토 이후 ZEUS 심의 필요
- ※ 접수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는 사업단에서 건별로 검토 후 심의결과 안내

4.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

- 2025년도 조정 연구비는 [붙임4] 과제목록(엑셀파일)을 확인하여 작성
 - ※ 차년도 협약변경 시 연구비는 당초 연구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반영될 예정으로, 반드시 <u>엑셀파일의 2025년도 조정</u> 연구비를 확인하여 계에 맞춰 비목별 연구비 재작성 필요(단, 연구수당은 협약당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 불가)
- 성과 작성 대상기간은 2024년도 당해 연구기간(2024.10.1.~2025.3.31.) 동안의 연구 성과임
 - 논문 및 특허는 acknowledgement(사사)를 표시해야 하며,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(등록) 또는 게재된 것만 인정
 - ※ 성과등록 방법은 붙임 참조
 - ※ accepted/in press인 논문도 성과등록 시 작성 가능
- 보고서는 [붙임2] 서식을 활용하여 한글파일(.hwp)로 작성하되 글꼴 및 크기 등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

5. 2025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에 따른 협약변경 안내

- 2025년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예산 확정액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
 - (조정근거)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13조(연구개발비 부담·지급·사용·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·정산 등) 제3항 제1호
 - (조정내용) 2025년도 연구기간 축소에 따른 연구비 조정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당초	변경
연구기간		2025.4.1. ~ 2026.3.31.	2024.4.1. ~ 2026.1.31.
		(12개월)	(10개월)
연구비 (유형 I)국가전략기술확보형		3,000	2,500
연구비	(유형॥)자유공모형	2,000	1,667

- 조정 연구비는 2차에 걸쳐 분리 지급([붙임4] 참조)

(단위: 원)

	구 분	1차 지급 (차년도 협약변경 승인 이후)	2차 지급 ('26년 1월)	합 계
연구비	(유형 I)국가전략기술확보형	2,318,023,750	181,976,250	2,500,000,000
연구비	(유형॥)자유공모형	1,545,685,000	121,315,000	1,667,000,000

- ※ 차년도 협약변경 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조정된 정보로 반영될 예정
- ※ 2025년도 연구비는 <mark>감액되는 것이 아닌 연구기간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, 2025년도 연구기간이 2개월</mark> 축소되는 대신 2027년도 연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예정임
- ※ 조정된 총 연구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는 주관-공동연구기관 간 협의하여 편성 (당초 기관별 구성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편성 요망)
- ※ 조정된 총 연구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여 직접비 및 간접비 재계산(간접비는 천원 단위 이하 절사)

6. 기타 사항

□ 연차보고서 제출 관련 문의처

○ 사업 관련 문의처: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(kucrf@snuh.org,

02-2072-4354/4353/4355)

○ IRIS 관련 문의처: IRIS 콜센터 (1877-2041)

□ 논문 사사표기 및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안내

○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하며,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해야 함

< 논문 >

- * 국문 표기 : "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(과제번호 : RS-2024-00000000)."
- * 영문 표기: "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-US Collaborative Research Fund(KUCRF),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: RS-2024-00000000)"

※ 과제번호는 RS-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

〈특허〉

- * 과제출처 기재 시기 : 특허 출원서 작성 시, 특허 출원서 보정 시
- * 과제출처 기재 방법
- 【과제고유번호】: NTIS 과제고유번호
- 【과제번호】: IRIS 과제번호 (RS-로 시작)
- 【부처명】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
- 【연구관리전문기관】: 한국연구재단,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【연구사업명】: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
- 【연구과제명】: (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)
- -【기여율】: 2개 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, ○/□과 같이 분수로 적고 합이 1이 되도록 기재
- 【주관연구개발기관】: 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명
- 【연구기간】: 협약서 상의 연구기간
 - ※ 과제번호는 RS-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

□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

○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

기관유형	현금계상 가능여부		
	• 중소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		
	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)		
영리기관 •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			
	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		
	참여연구자(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)		

□ 연구비 관련 사항

- 연구비 유용,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사업단에 보고
 - ※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(주관연구책임자 포함)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·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 으로부터 조사, 감사,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업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
- 연구비사용액 부당회수 및 인건비 부당회수 등 금지
 -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 부당회수 및 인건비 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,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

□ 연구계획 변경 관련 사항(연구개시 후 협약변경)

-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(IRIS R&D 업무포털-과제수행-(승인통보)협약변경신청-과제 조회 후 협약변경신청 버튼 클릭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승인성 협약변경 사항별 제출서류
- ※ 연구개발과제 변경/중단 신청서 파일 별도 등록 불필요(온라인으로 관련 내용 입력 후 협약변경신청 최종 확인 버튼 클릭 시 신청서 파일 자동 생성)

변경내용(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)	제출서류
▶ 연구과제 중단(조기종료 포함) ※ 변경신청 화면 내 변경항목 선택〉수행포기 선택 및 필수입력 정보 입력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증빙서류(정당한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③ 해당연도 연구비 집행내역 ※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집행(예산실적)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 용도별 예산/집행액/집행잔액이 확인 가능한 자체 서식 으로도 제출가능 ④ 최종보고서 ⑤ (해당 시)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 사유서
▶ 연구과제명 변경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기본정보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연구개발내용(과제명) 변경 ▶ 연구목표(내용)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과제요약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최종 목표 변경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※ 연구목표(내용)와 과제명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 각각 신청 ※ 변경사유 란에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(4000bytes까지 입력 가능)하고,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자유 서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문서 첨부
▶ 연구기간 변경 (육아휴직 등)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과제요약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전체/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※ 연구기간 연장 시, 마지막 연차 연구기간을 연장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출산/육아휴직에 한해 증빙서류(출산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증명서 등) 제출
▶ 6개월 이상의 국내·외 파견연구(해외체류) ※ 안식년(연구년)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(출장비)로 계상불가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연구기관 탭〉 변경항목 선택〉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항목 선택〉변경사유 선택(국내파견 등)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국내·외 파견연구(해외체류) 신청서 ③ 증빙서류 - 초청편지 - 주관연구기관장 동의서 또는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

변경내용(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)	제출서류
 ▶ 주관연구기관 변경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연구기관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 ※ 연구개발비 탭 내 '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' 팝업창 작성 필수 	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변경 전/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(포기서) 변경사유(의견)서 및 과제현황 증빙서류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 이직할 기관 재직(예정)증명서
▶ 공동, 위탁연구기관 변경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연구기관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 공동,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※ 연구개발비 탭 내 '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' 팝업창 작성 필수	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변경 전/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(포기서) 변경사유(의견)서 및 과제현황 증빙서류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 이직할 기관 재직(예정)증명서
 ▶ 연구책임자 변경 ─ 연구책임자에게 사망, 퇴직, 건강악화, 출산·육 아,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, 담당 업무의 변 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연구기관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주관,공동,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 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변경 전/후 연구책임자 동의서(포기서) ③ 변경사유(의견)서 및 과제현황 ④ 변경 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 — 인사이동 증빙서류 등 ⑤ 변경 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 — 재직증명서 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—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—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
➤ 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(시설장비심의) -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신규구입/변경/취소 ※ 구입 후 반드시 ZEUS에 등록 ※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ZEUS 심의 필요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> 연구장비 탭 > 변경항목 선택 >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(3천만원 이상, 구축포기/변경 및 신규 도입) ※ (필요시)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> 연구개발비 탭 > 변경항목 선택 > 연구시설장비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③ 장비 중복성검토 확인서 ④ 증빙서류 - 비교 견적서 - 제품 카탈로그
▶ 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(시설장비심의 <u>외</u>) ※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〉연구개발비 탭 〉 변경항목 선택〉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 ※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에 한함 ※ 토보서 형양병격은 사어다 수이 언어 바여/다 수요	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인성 및 통보성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, 승인성

- ※ 통보성 협약변경은 사업단 승인 없이 반영(단, 승인성 및 통보성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,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단 승인 전까지 통보성 변경도 보류됨)
- ※ IRIS 기능개선 등에 따라 메뉴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[참고]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

제73조(사전 승인 대상)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)을 변경하려는 경우
- 2.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(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
- 3.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)을 증액하려는 경우
- 4.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
 - 나.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
- 5. 연구시설·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(부가가치세 및 구입·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·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
 - 나.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(부가가치세 및 구입・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・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(다만, 환율변동, 물가상승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%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다.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(부가가치세 및 구입・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・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(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・장비를 연구시설・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
 - 라.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·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
- 6.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
 - 나.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
 - 다.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
- 7.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
- 8.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(단,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- 9.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(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)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
- 10.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)을 증액하려는 경우
- 11. 연구시설 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
- 12.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)을 증액하려는 경우(단,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
□ 중단 과제 관리

-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,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승인 요청
 - 과제 중단 신청 시,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(아래)를 적용하며,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※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

- 과제 중단 신청 시,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,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- ※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·확정

	구분	세부내용
	이직	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(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)
신분 변동	퇴직	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(단,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)
	공직 등 임명	국공립·사립대학교 총장, 공공기관의 장(또는 임원) 및 공무원(국회의원, 장(차)관 포함)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
사망, 질	병, 육아 등	홍수, 지진 등의 천재지변, 화재, 폭발, 폭동, 소요, 동원령 선포,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, 사망, 불구, 폐질, 사고, 장기입원, 질병휴직, 출산·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타 사업 선정		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
기타	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※ 수행포기의 사유(불가피성) 및 시점(잔여 연구기간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-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
 -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,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, '국가연구개발활동'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&D 사업 사전기획,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
 - ※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

제34조(제재처분의 사후관리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*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(연구지원은 제외한다)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.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

□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

-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,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 검토
 - ※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겨 중인 경우.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
 - ※ 안식년(연구년)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(출장비)로 계상할 수 없음

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

제17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)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- 1.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
- 2.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(교육훈련, 출장, 연수 등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
□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 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
-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
 - ※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유관기관으로 문의
 - ※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: http://irb.or.kr (irb@nibp.kr)

□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·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

-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을 출원·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※ 관련 근거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6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
- 개인명의 지식재산권(특허 등) 등록에 의한 위반
 - 지식재산권 성과(특허 등)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&D 관련 법령 위반 행위

※ 관련 근거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 및 제32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

□ 연구노트 작성

-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(연구노트)를 작성·관리해야 함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
 - ※ 관련 근거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5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」
 - ※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

□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

-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)는 관련법령* 및 가이드라인**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
- 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
- **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(https://www.labs.go.kr)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(연구실안전법·제도 문의처: 043-240-6477)

□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

-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,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
-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검증·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
- ※ 관련 근거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57조 및 제58조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-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-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 - 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(선정·단계·최종)에 반영될 수 있음
- ※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(https://safe.koar.kr) 활용 권고

□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
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,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·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※ 단순행정,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,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,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

□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 인체자원은행(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: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
- * 인체유래물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□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
- ※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) 확인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

-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, 특허,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
- 화합물의 경우,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 (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, 042-860-7190)에 기탁하여야 함
 - ※ 관련 근거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3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